

VI 결어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쟁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이 지출하는 직접비용뿐 아니라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의료분쟁의 급증으로 인하여 의료사고의 위험 때문에 방어진료·과잉진료·응급의료회피·사고빈도가 높은 진료과목의 전공기피 등 부작용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사고의 발생이 의료분쟁, 의료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발생된 의료사고에 대하여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1988년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건의 이후 18년 이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사회각층의 법률제정에 대한 기대가 높다⁷³⁾(2006년 12월 현재 국회에는 이기우의원(안) 및 안명옥의원(안)이 계류되어 있다).

한편 2006년 안명옥 의원(안)의 형태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고 분쟁조정기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의료계와 보험업계는 의료리스크의 관리와 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책무를 지게 된다. 의료계의 경우 이제까지의 배타적인 권위주의적 업무행태, 즉 업무상의 과오에 대하여 은폐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의료리스크의 사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보험업계 역시 의료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의 정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의료배상책임보험은 미국 등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금의 고액화로 인한 보험사의 시장철수나 의료관계자의 보험료부담으로 인한 보험가입 기피

7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YMCA 등 시민단체들은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의료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의료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국민서명운동과 국회입법 청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문화일보('06. 2.15)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감안,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가입의 의무화, 공제제도와 역할분담, 적절한 보상한도액과 위험률관리 등이 필수 요소이며 이를 통해 손해보험사는 보험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보험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